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5845 제출연월일: 2020. 10.

제 출 자: 대구광역시장

1. 개정이유

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「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」의 유치기업평가위원회가 폐지 예정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을 「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」의 유치기업 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규정을 삭제하고, 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과 구성·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·추가함 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신구조문대비표 : 붙임 참조

나. 관계법령 :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등(붙임)

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합 의 : 투자유치과와 합의되었음

마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0. 9. 21. ~ 10. 12.(21일간)

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아님
- 3) 성별영향평가: 개선사항 없음
- 4) 부패영향평가: 개선의견 없음
- 5) 갑질영향심사: 개선의견 1건
 - ※ 안 제3조제2항 중 "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"는 불명확한 규정으로 판단되며 자의적 권한 행사 우려로 구체적 내용으로 검토요청 → "「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"로 수정
- 6) 비용추계서 : 미첨부사유서 붙임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3조(산업입지심의회)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대구광역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산업 입지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- 2.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·변경·개발 및 해제에 관한 사항
 - 3. 산업단지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
 - 4. 산업단지 및 기존공업지역의 재생사업에 관한 사항
 - 5. 산업용지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업체 평가 · 선정 등에 관한 사항
 - 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「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 -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,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제1항제5호에 관한 심의회를 개최 시 위원은 시 소관부서 공무원, 산업용지 공급 및관련 산업분야 기술·경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④ 위원은 심의·자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할 때마다 임명 또는 위촉하고, 해당 위원의 임기는 안건의 심의·자문이 끝나는 때에 종료된다.

- ⑤ 심의회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안이나 경미한 안건 또는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.
- ⑥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산업단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.
-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혀 했

- 제3조(산업입지심의회) ①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산업입지심의회(이하 "산업입지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산업용지의 공급 및 분양에 관한 사항
 - 2. 산업용지의 가수요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입주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
 - 3. 산업단지 및 기존공업지역의 재생사업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위원장이 산업단지 및 기존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② 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은 「대구 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」제14조 에 따른 대구광역시 유치기업평가 위원회에서 대행한다.

- 개 정 안
- 제3조(산업입지심의회) ①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대구광역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(이하 "심의회" 라 한다)를 둔다.
 - 1.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- 2.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 단지의 지정·변경·개발 및 해제에 관한 사항
 - 3. 산업단지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
 - 4. 산업단지 및 기존공업지역의 재생 사업에 관한 사항
 - 5. 산업용지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 업체 평가·선정 등에 관한 사항
 - 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
-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「대구광역시 각종의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-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,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제1항제5호에 관한 심의회를 개최 시 위원은 시 소관부서 공무원, 산업용지 공급 및 관련 산업분야 기술·경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④ 위원은 심의·자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할 때마다 임명 또는 위촉하고, 해당 위원의 임기는 안건의 심의·자문이 끝나는 때에 종료된다.
- ⑤ 심의회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안이나 경미한 안건 또는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.
- ⑥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산업단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.
- 8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관계 법 령

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(약칭: 산업입지법)

제3조(산업입지정책심의회) ①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 교통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3. 3. 23.>

- ② 심의회의 기능·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산업단지의 지정·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와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자문을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와 시·군·자치구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둘 수 있다. 〈개정 2016. 12. 20., 2020. 6. 9.〉
- ④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·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(약칭: 산업입지법 시행령)

제2조의2(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)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01. 6. 30., 2007. 10. 4., 2011. 11. 16., 2012. 11. 20., 2014. 7. 14., 2016. 11. 8.>

- 1.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
- 2.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3.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· 변경 · 개발 및 해제에 관한 사항
- 4. 도시첨단산업단지(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만 해당한다)의 지정·변경·개발 및 해제에 관한 사항
- 5.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(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는 제외한다)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한 관계기관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
- 6. 삭제 <2007. 10. 4.>
- 7. 산업단지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
- 8.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(이하 "이전기업전용단지"라 한다) 지정·개발에 관한 사항
- 9.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(이하 "재생사업지구"라 한다)의 지정승인에 관한 사항
- 10. 기타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

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 :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5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함.

3. 미첨부 사유

본 개정안은 기존 산업입지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.

4. 작성자 : 경제국 산단진흥과장 김 광 묵